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20 선고 2022가단673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0. 2. 18. 체결된 10,000,000원, 2020. 3. 20. 체결된 5,000,000원, 2020. 5. 11. 체결된 3,000,000원, 2020. 5. 20. 체결된 2,000,000원, 2020. 6. 9. 체결된 3,000,000원, 2020. 6. 22. 체결된 2,000,000원, 2020. 7. 10. 체결된 3,000,000원, 2020. 7. 20. 체결된 1,500,000원, 2020. 7. 27. 체결된 500,000원, 2020. 8. 4. 체결된 2,000,000원, 2020. 8. 12. 체결된 3,000,000원, 2020. 8. 13. 체결된 5,9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박신영

별지